

#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윤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92
----------	------

발의연월일: 2023년 6월 일

발 의 자: 윤혜선, 조정식, 강상태, 김선임,  
고병용, 최현백, 박기범, 성해련,  
서은경, 이군수, 박경희, 정연화,  
이준배, 조우현, 최종성, 김윤환  
(이상 16명)

## □ 제안이유

- 간호법 제정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초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건강 증진 및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 통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 □ 주요내용

- 정부는 초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시대적 보건의료 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함.
-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서 간호 인력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명확히 확대, 보장되어야 함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공감을 하였기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함.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행위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배치 등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 붙임 :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 1부.

#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으로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들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임상간호사 수는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51.8% 정도이며 이들의 근속연수는 7년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근속연수가 짧으며 힘들게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일찍이 그만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간호사의 직무 어려움의 이유에는 과중한 업무량, 낮은 보수 수준,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등으로 파악된다.

현행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분장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으로 규정한다. 이렇다 보니 간호업계에서는 사실상 의사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되고 있어 간호사 업무영역에는 제한이 없다.

고령화 및 질병 구조와 변화로 만성질환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의학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증진 활동 및 사회적 돌봄 예방이나

관리가 필요하기에 명확한 업무 범위를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안은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간호법은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간호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으로 다른 직역에 업무 침탈이 아닌 간호 업무의 모호성을 없애는 법안이며, 다른 직역의 업무 침탈과 관련된 내용은 간호법에 없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부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므로 독립적인 개원 가능성 또한 없다.

우리나라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는 12~13명이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종합병원 16.3명, 일반병원에서는 최대 43.6명의 환자를 간호사 1명이 돌보는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시적인 간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이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고 있으며, 40대가 주축을 이루는 선진국 간호사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는 곧 국민 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 및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초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시대적 보건의료 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서 간호 인력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명확히 확대, 보장되어야 함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공감하였기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행위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배치 등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3. . . .

**성 남 시 의 회**